

#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7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4월 29일  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 이유

- 현행 '서울특별시 먹거리 위원회'가 2인의 공동위원장 체제임을 고려하여, '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,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'에 대한 '사전 지명권'을 '시민건강국장'의 권한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.
- 동 개정(안) 제32조에서 '위원의 해촉'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조문을 제8조의 2로 명확히 하여 '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'을 고려한 '위원의 해촉'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'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,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'에 대한 '사전 지명권'을 '시민건강국장'의 권한으로 명확히 함. (안제24조제4항)
- 동 개정(안) 제32조에서 '위원의 해촉'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조문을 제8조의 2로 명확히 하고자함. (안제32조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4조제4항 중 “위원장이 미리”를 “위원장 중 시민건강국장이 미리”로 한다.

안 제32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제1항”을 “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(안)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 (서울특별시장) (1779호)	수 정 (안) (보건복지위원회)
<p>제24조(위원장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</p>	<p>제24조(위원장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<u>위원장이 미리</u>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24조(위원장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<u>위원장 중 시민건강국장이 미리</u>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<p>제3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위촉 해제·결격사유) ① 위원 중 심의·자문 등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·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</p>	<p>제32조(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「<u>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</p>	<p>제32조(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) --- ----- ----- 「<u>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 제8조의2 -----</p>

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·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·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에 따른다.

-----.

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##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충분한”을 “충분하며 안전한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위촉직 위원”을 “위촉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되고”를 “맡고”로, “된다”를 “맡는다”로 한다.

제24조제4항 중 “모두”를 “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”로, “때는”을 “때에는”으로, “대리한다”를 “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중 시민건강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로 한다.

제26조제3항 본문 중 “서면으로 통보”를 “통보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4항 중 “분기”를 “분기별”로, “할”을 “개최할”로 한다.

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2조(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.

제33조 본문 중 “출석한 자에 대하여”를 “참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4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35조 중 “2024년 9월 21일”을 “2027년 9월 30일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6667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2조(기본이념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<u>충분한</u>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.</p> <p>④·⑤ (생 략)</p> <p>제2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<u>위촉직</u>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⑤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정책과장이 <u>되고</u>,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<u>된다</u>.</p> <p>제24조(위원장 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위원장 <u>모두</u>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<u>대리한다</u>.</p>	<p>제2조(기본이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충분하며 안전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3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촉위원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 <u>맡고</u>----- ----- <u>맡는다</u>.</p> <p>제24조(위원장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모두가 부득이한 사유</u> <u>로</u> ----- - <u>때에는</u> ----- <u>대</u></p>



제26조(위원회 회의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상정안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~ ⑥ (생략)

제28조(분과위원회) ① ~ ③ (생략)

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로 하되,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.

제3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위촉 해제·결격사유) ① 위원 중심의·자문 등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

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중 시민건강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6조(위원회 회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통보-----  
--. -----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분과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분기별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개최할 --.

제32조(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

건의 심의·자문 등에 대하여는  
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  
의 공정한 심의·자문 등과 조정  
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 
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 
심의·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  
다.

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  
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  
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자문 등에  
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  
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 
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  
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
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  
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 
아니한 사람

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 
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 
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 
되지 아니한 사람

조례」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 
다.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제33조(수당) 시장은 제26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3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5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.

제33조(수당) -----  
-----  
-----  
--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--  
-----  
-----.

제34조(운영세칙) -----  
----- 필요한 -----  
-----.

제35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-----  
----- 2027년 9월 30일-----  
-----.